

〈붙임〉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안내

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'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 사업자 중 직수출(대행수출 포함)만 있는 사업자가 1. 20.(토)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,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(2.9.) 보다 10일 앞당겨 1. 30.(화)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Ⅰ 영세율 적용대상 '재화의 수출' 중 조기지급(1.30.) 대상인 것 Ⅰ

- 직접수출 :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
- 대행수출 :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

Ⅰ 영세율 적용대상 '재화의 수출' 중 조기지급 대상이 아닌 것 Ⅰ

- 중계무역방식 수출, 위탁판매수출, 외국인도수출, 위탁가공무역 방식수출 등 (부법 §21 ② 2 및 부령 §31 ① 1~4)
-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(부법 §21 ② 3 및 부령 §31 ② 1)
-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해외반출용 공급 재화, 수탁가공무역 등 (부법 §21 ② 3 및 부령 §31 ② 2~5)

※ (기타 영세율 적용 대상) 용역의 국외공급(부법 §22), 외국항행 용역 공급(부법 §23),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.용역(부법 §24), 「조특법」 영세율

※ 1.21.(일)~1.25.(목)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(또는 '1.20.까지 신고분'을 재제출)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.8.(목)까지 지급

자세한 내용은 「국세청 홈페이지 > 국세신고안내 > 부가가치세 > 참고자료실 > 세정지원 Q&A」 또는 「붙임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Q&A」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부서 :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(☎044-204-3212, 3214)